

4 재정운용계획

4-1. 성인지 예산현황

-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,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.
 -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.
-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,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중구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,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개, 백만원)

구 분	사 업 수	예 산 액
총 계	60	15,577
여성정책추진사업	1	4
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	59	15,573
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	0	0

▶ 2017년 당초예산 기준

●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?

-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
- 여성능력개발교육,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.

●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?

-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,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.
- 정보화교육, 지역정보화 촉진, 공무원 교육훈련,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.

●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?

-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,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

4-2. 주민참여 예산현황

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. 참여범위는 예산 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,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참여방법은 주민회의,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, 팩스,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.

-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증구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당초 세출예산	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	모델
208,210	310	1안

▶ 2017년 당초예산 기준

❖ 표준모델

구분	모델안 1	모델안 2	모델안 3
총 칙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시장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군수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	제1조(목적) 제2조(용어의 정의) 제3조(법령준수의무) 제4조(구청장의 책무) 제5조(주민의 권리)
운영계획	제6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	제6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	제6조(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)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제8조(의견 제출) 제9조(결과 공개)
위원회	제10조(위원회 운영 등)	제10조(주민참여예산위원회) 제11조(위원회의 기능) 제12조(위원회 구성) 제13조(위원회의 운영) 제14조(연구회 운영 등)	제10조(위원회 구성) 제11조(위원의 위촉 및 임기) 제12조(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) 제13조(기능) 제14조(운영원칙) 제15조(분과위원회) 제16조(회의 및 의결) 제17조(회의록 공개의 원칙) 제18조(해촉) 제19조(의견청취) 제20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) 제21조(주민참여 등 홍보) 제22조(위원에 대한 교육) 제23조(재정 및 실무지원)
지 원 기 타 부 칙	제11조(시행규칙) 부 칙	제15조(시행규칙) 부 칙	제24조(시행규칙) 부 칙

❖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부서명	사업명	예산반영액	비고
총 액		309.7	
전략경영실	방법용 CCTV 설치	20	
	불법쓰레기 단속카메라 설치 (동덕로30길 104-14 외 4)	비예산	
녹색환경과	RFID방식 음식물처리기 상부(햇빛)가리개 설치	2	
	불법쓰레기 단속카메라 설치	비예산	
건설안전과	아스콘 재포장	70	
	아스팔트 포장 정비	5	
	인도블럭교체	82	
	녹색통학로 전구간 LED보안등 설치	4.2	
	아스팔트포장	50	
	골목길 정비	60	
	하수관거 악취 제거제 설치	3.5	
교통과	남산공영주차장 앞 화단조성	10	
	남산100년 향수길 양방향 교차로 입구 반사경 설치	0.6	
대봉2동	자치프로그램 개설	2.4	

▶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

<http://www.jung.daegu.kr/new/pages/administration/page.html?mc=1810>

4-3. 성과계획서

-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, 성과지표 및 목표 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.
-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,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중구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, 단위사업수,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개, 백만원)

실국명	성과계획				예산액		
	전략 목표수	정책사업목표		단위사업수	예산액	전년도 예산액	비교 증감
		개수	지표수				
계	9	57	112	131	201,237	186,174	15,063
기획예산실	1	1	3	8	6,458	6,337	121
전략경영실	1	3	5	11	37,953	36,880	1,073
도심재생지원단	1	2	2	2	1,713	882	831
행정지원국	1	14	26	33	29,802	20,325	9,477
복지문화국	1	21	38	38	81,588	79,135	2,453
도시관광국	1	13	30	23	23,766	22,946	820
보건소	1	1	2	12	9,883	8,966	917
봉산문화회관	1	1	3	2	1,865	2,760	-895
의회사무과	1	1	3	2	1,340	1,356	-16
동	0	0	0	0	6,869	6,586	284

▶ 당초예산, 일반+기타특별회계

4-4. 재정운용상황개요서

-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.
-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, 재정자주도,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,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,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%)

재정자립도	재정자주도	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	자체사업비율	보조사업 비율	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
32.00	51.91	41.32	15.36	56.76	78.02

- ▶ 당초예산, 일반회계 기준

4-5.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

-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「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(행자부 훈령)」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,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.
-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, 의회관련 경비, 공무원 일·숙직비,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단위 : 천원)

항목별		기준액 (A)	예산편성액 (B)	차액 (B-A)
기관운영 업무추진비	단체장	58,300	58,300	0
	부단체장	40,700	40,700	0
시책추진 업무추진비		263,000	150,800	-112,200
지방의회 관련경비	의정운영 공통경비	39,600	39,600	0
	의회운영 업무추진비	38,720	38,720	0
	의원국외여비	22,750	22,750	0
지방보조금		1,334,108	870,840	-463,268
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		639,270	639,270	0
*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		1,492	1,194,600	-
**공무원 일·숙직비		60	172,260	-

▶ 기준액 산출기준은 '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(행정자치부)'을 참조하세요

(<http://lofin.moi.go.kr>)

☞ *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: 1인당 평균

** 공무원 일·숙직비 기준액 : 1일·야당

4-6.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(세출 효율화)

- 보통교부세 자체노력(세출 효율화)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(세출 효율화)에 반영한 금액으로 우리 중구(자치구)는 공시항목에서 제외됩니다.

4-7.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(세입확충)

- 보통교부세 자체노력(세입확충)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(세입 확충)에 반영한 금액으로 우리 중구(자치구)는 공시항목에서 제외됩니다.

4-8.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감액 사유	위반지출	지방교부세 감액금액
합 계		3백만원
법령위반 과다지출	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보조금 지원 등 부적정	3백만원

- ▶ 지방채발행 승인(지방재정법 11조, 55조), 투자심사(지방재정법 37조, 55조), 위반, 예산편성기준(지방재정법 38조) 위반 및 감사원·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

4-9.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

- 2016년에 우리 중구가 2017 회계연도에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로 증액된 현황은 없습니다.